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[해병대군사학과 규정]

현 행	개 정 안	비고
해병대군사학과 규정 연혁 1. 제정(2013.09.01) 가. (생 략) 나. 해병대군사학과의 특성화 교육 및 활동, 다전공 의무화, 졸업인증요건, 생활지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며, 이외의 사항은 단국대학교의 학칙, 군장학생 규정을 적용하고, 학생군사교육 관련 법령을 준용함. 다. 특히 졸업인증요건과 다전공의무화 제도를 채택함에 따라 장교 임관 시 병과선택, 임관 후 석·박사 위탁교육, 장기복무 선발, 진급 선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, 불가피한 사유로 전역 시 제2전공과 졸업인증요건을 활용하여 재취업이 용이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.	해병대군사학과 규정 연혁 1. 제정(2013.09.01) 가. (현행과 같음) 나. -----, 다전공 권장, ----- ----- -----. 다. (삭제)	※ 다전공 의무 → 권장
제2조(해병대군사학과 학생신분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군장학생 신분으로 “군장학생 규정” 과 “군장학생 규정 시행규칙” 의 적용을 받는다.	제2조(해병대군사학과 학생신분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(구.군장학생) 신분으로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” 과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” 의 적용을 받는다.	※ 명칭 변경

현행	개정안	비고
제3조(규정의 성격) 1. - - - - - 군장학생 - - - - - .	제3조(규정의 성격) 1. - - - - 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 - - - .	※ 명칭 변경
제4조(적용대상 및 범위) 1. (생략) 2. - - - - - , 군장학생 - - - 적용하며, 학생군사교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	제4조(적용대상 및 범위) 1. (현행과 같음) 2. - - - - - ,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 - - 적용하며, 학생군사교육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.	※ 명칭 변경/삭제
제5조(책무)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4. (생략) 5. - - - - - , 군장학생 - - - - - .	제5조(책무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- - - - - ,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 - - - .	※ 명칭 변경
제8조(절차탁마·건전 기풍 조성) 1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 11. (생략) 12. 군장학생의 - - - - - .	제8조(절차탁마·건전 기풍 조성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11. (현행과 같음) 12. 학과생으로서의 - - - - - .	※ 단어 수정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10조(언행 및 태도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 7. (생 략) 8. ----- -----, 또는 아침 점호 시에는 ----- ----- -----	제10조(언행 및 태도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7. (현행과 같음) 8. ----- -----, 또는 아침 교육 시에는 ----- ----- -----	※ 단어 수정
제13조(안전 및 건강관리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----- 군장학생 ----- ----- -----	제13조(안전 및 건강관리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---- ----- -----	※ 명칭 변경
제15조(교육과정) 1. 다전공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. 2. (생 략) 3. (생 략)	제15조(교육과정) 1. 다전공 이수를 권장한다. ※ 2024학년도 기준 23학번부터 적용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	※ 다전공 의무 → 권장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16조(학점 취득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-----, 군장학생 -----.	제5조(책무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,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----.	※ 명칭 변경
제19조(졸업) 1. ----- 졸업학점 및 다전공의무화(복수전공, 부전공) 학점 을 취득하고, -----. 2. (생 략)	제19조(졸업) 1. ----- 졸업학점을 취득하고, -----. 2. (현행과 같음)	※ 삭제
제21조(재입학·편입학·전과) 1. 군장학생 과 ----- “ 군장학생 규정” 및 “ 군장학생 규정 시행세칙”에 따른다. 2. ----- ----- “ 장학금 지급 규정 내 장학금 지급 기준표 ” 를 참조하고 따른다. 2-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신분으로 지급받은 모든 복장 , 비품, 장구 일체는 학과에 반납하여야 한다. 3. (생 략) 4. (생 략)	제21조(재입학·편입학·전과) 1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---- 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” 및 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세칙”에 따른다. 2. ----- ----- “ 장학금 지급 규정 ” 을 참조하고 따른다. 2-1. 해병대군사학과 학생신분으로 지급받은 모든 비품, 장구 일체는 학과에 반납하여야 한다.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	※ 명칭 변경 ※ 삭제
제22조(목적·배경) 1. (생 략) 2. ----- 다전공의무화 ----- -----.	제23조(졸업인증요건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다전공 이수 권장 ----- -----.	※ 다전공 의무 → 권장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23조(졸업인증요건) 1. (생 략) 2. 해병대에서 제시한 졸업인증요건은 다음과 같다.	제23조(졸업인증요건) 1. (생 략) 2. 해병대에서 제시한 추가적인 구비요건은 아래와 같으며, 가급적 4학년 1학기까지 달성하도록 권장한다.	※ 문구 변경
제24조(졸업인증요건 달성) 1. (생 략) 2. 태권도(해병대가 제시한 졸업인증요건) 2-1. 개인수련 혹은 무도 교과목 수강 을 통하여 - -. 2-2. (생 략) 2-3. (생 략) 3. (생 략) 3-1. (생 략) 3-2. - - - - - 4학년: 1급 이상(권장) 3-3. - - - - - 아침점호를 - - - -. 3-4. (생 략)	제24조(졸업인증요건 달성) 1. (현행과 같음) 2. 태권도(해병대가 제시한 졸업인증요건) 2-1. 개인수련 혹은 무도 교과목 수강 을 통하여 - -. 2-2. (현행과 같음) 2-3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3-1. (현행과 같음) 3-2. - - - - - 4학년: 2급 3-3. - - - - - 아침 교육을 - - - -. 3-4. (현행과 같음)	※ 문구 삭제 ※ 수정 ※ 단어 수정
제25조(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) - - -(학부모에게 통보). - - -.	제25조(졸업인증요건 미달성자) - - -.	※ 삭제
제26조(군사 및 교양도서 탐독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	제26조 (삭 제)	※ 삭제

현행	개정안	비고
제29조(특성화 활동) 1. (생략) 2. ----- -----. • 활동(시기) • ----, ---- 참가 3. (생략) 4. (생략) 5. (생략)	제28조(특성화 활동)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. • 활동명(일정) • ----, ----. ※ 「서해수호의 날」 추가 3. (현행과 같음) 4. (현행과 같음) 5. (현행과 같음)	※ 수정 ※ 수정 및 추가
제31조(훈육 및 상호적성 평가) 1. 적성평가는 훈육관이 군사학과생을 평가하는 ①훈육 적성평가와 단체생활에 있어 훈육관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군사학과생 상호간에 실시하는 ②상호적성 평가로 구분한다. 2. 적성평가는 3, 4학년을 대상으로 연1회(11월) 실시한다. 3.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. ① 명예심(용모 및 태도), ② 준법정신 ③ 지휘통솔(Leadership) ④ 도전정신(자기계발) ⑤ 교우관계(Fellowship)	제30조(훈육 평가) 1. 훈육평가는 자질, 품성, 생활태도, 체력을 훈육관이 평가하여 생활지도와 잠재역량 계발지도에 기초자료로 활용한다. 2. 훈육평가는 4년간 종합하여 4학년 2학기 중 실시하며 5개 요소를 평가한다. 3. 훈육평가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평가한다. ① 명예심(용모 및 태도), 준법정신 ② 지휘통솔(Leadership) ③ 도전정신(자기계발·관리) ④ 교우관계(Fellowship) ⑤ 체력관리(1~4년 1차 체력검정 결과)	※ 수정 ※ 추가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31조(훈육 및 상호적성 평가) 4.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. 4-1. (생략) 4-2. (생략) 4-3. (생략) 4-4. (생략) 5. 적성평가 - - - - -.	제30조(훈육 평가) 4. 평가방법은 각 평가 요소별 20점씩 부과,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며, 피 평가자의 우수한 특성 및 개성, 충고 및 개선사항 등을 기술한다. 4-1. (삭제) 4-2. (삭제) 4-3. (삭제) 4-4. (삭제) 5. 훈육평가 - - - - -.	※ 수정
-	제31조(초임장교 예비 병과분류) 1. 매년 해병대사령부로부터 3, 4학년을 대상으로 「초임장교 예비 병과분류 계획」을 접수한다. 2. 해당 학년별 예비 병과분류(안)을 공지한다. 3. 예비 병과분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. 3-1. 해당 학년 당사자 학생들의 의견수렴 3-2. 병과 조정 인원 발생 시, 상담 진행 후 재조정 3-3. 조정 불가 시,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 학과 차원에서 조정 후 해병대사령부로 통보 3-3-1. 다전공(복수전공 > 부전공) 관련 병과별 관련학과를 최우선순위로 한다. 3-3-2. 최우선순위로 조정이 불가할 시, 누적성적으로 순위를 결정한다. 3-3-3.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학생은 미배정 병과에 임의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	※ 추가

현행	개정안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-	<table><tr><th>구분</th><th colspan="2">병과별 관련학과</th></tr><tr><td>보병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4">• 전 학과</td></tr><tr><td>포병</td></tr><tr><td>기갑</td></tr><tr><td>*항공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*항공</td><td>• 누적성적(30%) + 체력(30%) + 공인외국어(40%)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정보</td><td>• SW융합대학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공병</td><td>• 공과대학, 환경원예조경학부, 도시계획·부동산학부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정보통신</td><td>• SW융합대학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군수</td><td>보급</td><td>• 경영경제대학, 환경자원경제학과, 생명자원학부, 식품영양학과, 식품공학과</td></tr><tr><td>수송</td><td>• 경영공학과</td></tr><tr><td>병기</td><td>• 공과대학, 신소재공학과, 에너지공학과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재정</td><td>• 경영경제대학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공보정훈</td><td>• 문과대학,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, 문예창작학과</td></tr><tr><td colspan="2">군사경찰</td><td>• 법과대학</td></tr></table> * 항공병과 : 체력 부분은 국민체력100 인증센터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기준으로 한다. 체력측정 인증서 유효기간은 예비 병과 분류 월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. 「1등급_30점, 2등급_25점, 3등급_20점, 3등급 미만_10점」으로 적용한다. ※ 성적은 누적학점에 대한 환산점수(백분율)를 기준으로 한다. ※ 공인외국어는 「공인영어성적 환산 기준표」를 기준으로 한다.	구분	병과별 관련학과		보병	• 전 학과		포병	기갑	*항공	*항공		• 누적성적(30%) + 체력(30%) + 공인외국어(40%)	정보		• SW융합대학	공병		• 공과대학, 환경원예조경학부, 도시계획·부동산학부	정보통신		• SW융합대학	군수	보급	• 경영경제대학, 환경자원경제학과, 생명자원학부, 식품영양학과, 식품공학과	수송	• 경영공학과	병기	• 공과대학, 신소재공학과, 에너지공학과	재정		• 경영경제대학	공보정훈		• 문과대학,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, 문예창작학과	군사경찰		• 법과대학	※ 추가
구분	병과별 관련학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보병	• 전 학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포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기갑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*항공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*항공		• 누적성적(30%) + 체력(30%) + 공인외국어(40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보		• SW융합대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병		• 공과대학, 환경원예조경학부, 도시계획·부동산학부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보통신		• SW융합대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수	보급	• 경영경제대학, 환경자원경제학과, 생명자원학부, 식품영양학과, 식품공학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수송	• 경영공학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병기	• 공과대학, 신소재공학과, 에너지공학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재정		• 경영경제대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보정훈		• 문과대학,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, 문예창작학과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군사경찰		• 법과대학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32조(생활관 입사 및 생활) 1. -----, 생활관 관리팀과 -----. 2. (생 략) 3. 생활관 배정은 학생자치위원회의(학과 학생회+과대표) 결정에 따른다. 4. ----- 생활관 관리팀으로부터 -----. 5. ----- (생활관 관리팀 점검은 별도).	제32조(생활관 입사 및 생활) 1. -----, 생활관 행정팀과 -----. 2. (현행과 같음) 3. 생활관 배정은 생활관 행정팀으로부터 위임 시, 학생자치위원회의(학과 학생회+과대표)가 배정할 수 있다. 4. ----- 생활관 행정팀으로부터 -----. 5. ----- (생활관 행정팀 점검은 별도).	※ 명칭 변경 ※ 문구 수정
제35조(교육과정소위원회) 1. (생 략) 2. 군장학생 -----	제35조(교육과정소위원회) 1. (현행과 같음) 2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----	※ 명칭 변경
제38조(목적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(생 략) 4. ----- ----- 군장학생 ----- -----	제38조(목적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---- -----	※ 명칭 변경
제41조(군장학생 해임·재적 심의 및 조치) 1. 군장학생 규정에 따른다. 2. ----- ----- 군장학생 -----	제41조(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해임·재적 심의 및 조치) 1.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다. 2. ----- ----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----	※ 명칭 변경

현 행	개 정 안	비고
제42조(졸업심의) 1. (생 략) 2. (생 략) 3. ----- 군장학생 ----- --.	제42조(졸업심의) 1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----- --.	※ 명칭 변경
제43조(기타) ----- -- , 군장학생 규정(군장학생 규정 시행세칙 포함) 에 ----- -----.	제43조(기타) ----- -- ,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(군 가 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세칙 포함)에 -----.	※ 명칭 변경